

## 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-0031호

### 2026년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(R&D)사업 [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] 신규과제 공고

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「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&D 사업」의 2026년도 신규 과제를(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)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9일

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

#### 1.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우주항공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, 고급 연구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, 해외 우수인재 유치·활용을 통한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
- (사업개요)

사업명	총 연구개발기간	총 사업비
우주기술 혁신인재양성(R&D)	'26~'30(5년)	320억
(내역1) 산학협력 연구현장 연계 고급인력 양성	'26~'29(5년)	200억
<b>(내역2)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</b>	<b>'26~'30(6년)</b>	<b>50억</b>
(내역3) 시 기반 우주항공 연구개발 프로젝트 고도화	'26~'30(5년)	70억

- (내역2)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우주항공기관이 활용하고 해외 인력들이 사업관리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보조 및 지원
- (수행주체) 대학, 출연(연), 기업 등

## 2.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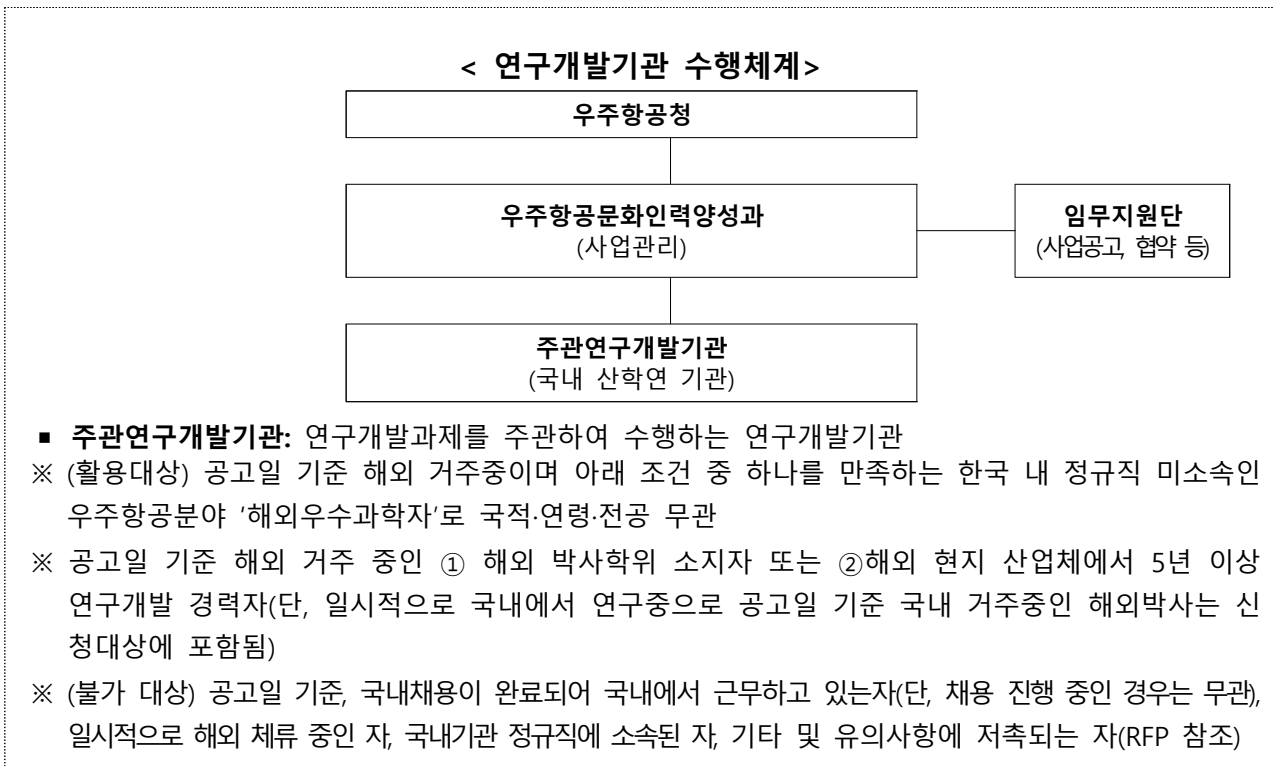
### ○ (선정규모)

세부사업명	과제명	총 연구기간 ('26년 연구기간)	선정 인원수	총 연구비 ('26연구비)	비고
우주기술 혁신인재양성 (R&D)	(내역2)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	'26~'28* ('26.7.~'26.12.)	0명 (예산내 활용)	5,000백만원 (1,000백만원)	상세내용 불임 RFP 참조

- ※ 민간부담금은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비와 별도로 매칭하여 부담하여야 함
- ※ 연구비는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전체/연도별 연구비는 변동될 수 있음
- ※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정부출연금이며, 간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의거하여 5% 적용
- ※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
- \* (지원기간) 과제당(인원당) 최대 30개월<sup>(1)18개월+<sup>(2)12개월</sup></sup>
  - 1) '26년도 실근무 개시일~'27년(실근무 개시일은 '26.7월 가정 시 18개월)
  - 2) 단계평가 후 '28년 연장지원(12개월)

## 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### ○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



- ※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. 단, 대학의 경우 학기 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 (상세사항문의 필요 ☎ 055) 856-4238 / [kasarnrd@korea.kr](mailto:kasarnrd@korea.kr))
- ※ 해외 우수과학자(신진연구자~석학급) 유치 유형은 계약직 또는 비전임교원 등

### ○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구분	자격 요건
우주항공청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	·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
대학(원)	·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 중 우주항공 및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
기업	· 우주항공 관련 제조, 생산,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※ 사업 지원시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(예시 :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서, 사업자등록증 서류 등)

###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

**혁신법 제2조(정의) 3.**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**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*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  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1.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 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### - 기타 개별법 및 특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

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지원자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  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덕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  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-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\* 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□ 신청 제한

- 기관 당 선정 인원 제한은 없으나 인재활용위원회에서 규모 최종 확정 예정
- **(참여제한)**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단,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  - ※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
- **(과제기획 참여자)** 해당 과제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
- **(지원제외)**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(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
-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 - 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  - ※ 단,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\*,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
  - \*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+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"0" 이상인 경우(단,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(우선주) 자본금에 한함)
-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※ 단,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
-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(주관/공동/위탁) 및 연구책임자(주관/공동/위탁)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-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

○ (연구기관 구성 제한)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\*으로 구성해야 함

\* 동일기관 여부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시, 법인인증서 사용)

※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,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

-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**< 동일개발과제 내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>**

연구개발기관 구분	사례1	사례2	사례3	사례4	사례5
주관연구개발기관	A기관	<b>A기관</b>	A기관	<b>A기관</b>	A기관
공동연구개발기관1	B기관	<b>A기관</b>	<b>B기관</b>	B기관	<b>B기관</b>
공동연구개발기관2	C기관	B기관	<b>B기관</b>	C기관	C기관
위탁연구개발기관	D기관	D기관	C기관	<b>A기관</b>	<b>B기관</b>
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	가능	<b>불가능</b>	<b>불가능</b>	<b>불가능</b>	<b>불가능</b>

- (3책5공 제외) 본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\*에 따라 3책5공 대상에서 제외함

※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제2항

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, **인력 양성 사업** 및 학술 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<중략>

- (인건비 계상률\*)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\*\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
\*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=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/연 급여)

\*\*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%를 초과한 경우

- (인건비계상률 하한선 적용)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인건비계상률 70% 이상 필수

< 수정직접비 >

총연구비			
직접비			간접비**
인건비 (수정직접비의 70% 이상)	연구활동비	그 외 비목	
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	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, 해외연구자활용지원원비(연구생활장려금)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※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	인재유치 비용 (유치설명회 부스비용 등)	수정직접비*의 5% (전담인력 인건비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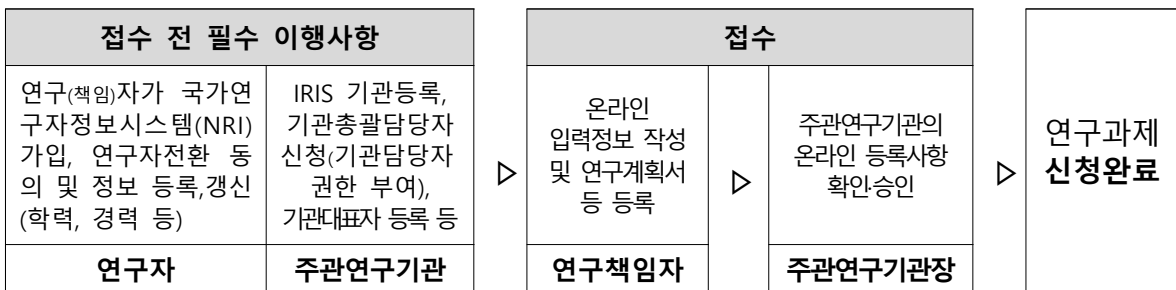
\* 수정직접비 : 직접비 - 현물 - 위탁연구개발비 - 국제공동연구개발비 - 연구개발부담비

\*\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적용

#### 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-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**(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- 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,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<참고>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  
[별첨]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

- 1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, ③ NRI 학력/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의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\*\*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, 현재 수행·신청 중인 과제 목록

- ①,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- 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 또한 'IRIS 회원가입' 및 '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' 필수.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,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

- 1) 매뉴얼 : [별첨]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  - 2) 과제신청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'00대학교 산학협력단'이 아닌, "00대학교"로 신청요망
  - 3)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    -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,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- 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어, 접수마감까지 <00대학교>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◆ 관련문의(IRIS 문의처)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

- ※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(연구자용 접수 매뉴얼) 참고([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](#))
- ※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 → 알림/고객 → 자료실 → IRIS 사용 매뉴얼 '접수매뉴얼'다운로드
- 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제출서류

-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(HWP 또는 HWPX)
- 기타증빙 각 1부(PDF)

<제출서류 목록>

구분		항목명
연구개발 계획서	필수제출 서류	연구개발계획서
		첨부1.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*
		첨부2.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(CV 등)
	선택제출 서류	첨부3. [협약용] 안전관리 계획 등
		첨부4. [협약용]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·보완 대비표
	첨부5. [협약용, 해당 시]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계획	
기타증빙	필수제출 서류	1.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
		2.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/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		3. 사전점검 체크리스트(신청기관에 한해 별도제공)

	선택제출 서류	4. (해당 시)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※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
		5. (해당 시) 지자체 지원확약서
		6. (해당 시)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서, 사업등록증 등 ※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
해외우수 과학자 관련 제출자료	필수제출 서류	1. (접수 시) 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 등 소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
		2. (협약체결 시) 고용계약서 ※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. 단, 대학의 경우 학기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(상세사항 문의 필요 ☎ 055) 856-4238 / kasarnd@korea.kr)
		3. (협약체결 후) 고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 (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매월 게재)

제안서 보완요구

-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,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,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우주항공청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-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,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,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

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

-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우주항공청의 재산으로 귀속되며,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
- 우주항공청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

연구계획서 분량 제한

- 연구개발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 작성

## 5.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## 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공고 기간	2026. 3. 19.(목요일) ~ 5. 18.(월요일) 18:00까지
접수 기간	2026. 3. 26.(목요일) ~ 5. 18.(월요일) 18:00까지 *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(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)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·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

-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등록(등록시 접수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 및 검토·승인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※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(연구자용 접수 매뉴얼) 참고([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](#))

-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RFP별 응모자가 없는 경우 10일간 재공고하며, 재공고에도 불구하고,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
-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
- 단독 응모인 경우 재공고 없이 평가를 진행하되, 전문가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

※ 단,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

-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필수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 내용 중복,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
  -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  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최초 공고일('26. 3. 19.) 기준임  
- 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
- ※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
## 6. 선정방법 및 절차

### □ 추진근거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,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
-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기관의 공모)

### □ 평가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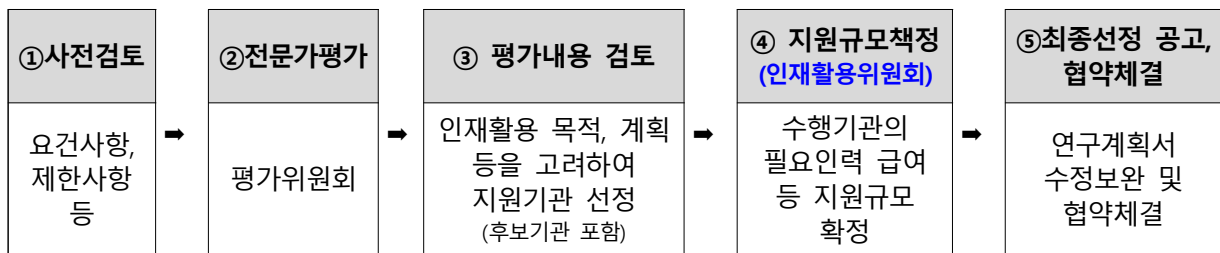
-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,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
-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
-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
-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(단독응모의 경우 70점 미만)

□ 평가 방법 : 발표 또는 서면평가

○ 평가 실시(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)

※ 외부 요인에 따라비대면 온라인평가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(세부 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)

□ 평가 절차 및 평가 지표



① 사전검토

- 제출서류 구비 여부,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, 신청 자격 적합 여부, 과제와의 유사 중복성 등 검토

② 전문가 평가

- 평가방법 :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
  - ※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(필요시)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
  - ※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
③ 평가내용 검토 및 지원기관(후보포함) 선정

- 전문가 평가 결과, 예산사정,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(안)을 수립
- 복수 응모의 경우,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
- 단독 응모인 경우,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
- 선정(안)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, 공정성, 연구비 대비 적정성,

정책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 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 과제를 최종 확정

#### ④ 인재활용 지원규모 확정

- 선정된 기관의 활용 해외인력에 대한 급여 등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인재활용위원회\*를 개최하여 급여 등 지원규모 확정

\* 내·외부 전문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되며, 활용 인재의 이전 연봉과 연구·사업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금액 결정(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(Salary slip) 및 희망연봉, 시장 적정연봉 등 고려)

※ 해외인재 활용계획, 활용방안 및 인재활용위원회의 해외우수과학자별 적정 지원 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하므로 개인별 지원금액 크기가 다름

#### ⑤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

-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
-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

### □ 평가 지표

#### < 선정평가 항목(안) >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	· 해당기관 우주항공분야 <b>국가정책 부합성</b> · 해당기관 우주항공분야 <b>정부지원 필요성</b>	20
해외인력 우수성 및 유치 적합성	· 해당기관의 해외인력의 <b>우수성</b> · 해외기관의 해외인재 유치 <b>기준의 적합성 및 구체성</b> (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)	20
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	· 해외과학자 <b>활용계획</b> (목표·연구내용·사업관리 등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포함) · 해당기관 사정에 맞는 <b>맞춤형 성과관리 방안</b> (기대효과 포함)	30
지원항목 및 기대효과	· 해당기관의 해외 우수과학자 <b>지원항목 및 계획의 구체성</b> ·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의 <b>부수적 기대효과</b> (국내정착, 국제네트워크 지속, 공동연구 등)	30
합계		100

※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,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
(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(30점) → 지원항목 및 기대효과(30점) → 해외인력 우수성 및 유치 적합성(20점) → 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(20점))

## 7. 기타사항

- 중도 계약 종료 시 수행기관 및 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인재활용 위원회를 거쳐 특별평가, 환수 등의 패널티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
- 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,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현재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 (예: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)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게재해야 함
- 표준계약서에 인건비, 연구생활장려금, 항공료, 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 등 구체적인 비목별 지원금액\*과 연구기간 등 활용 계약 조건을 적시하고 향후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를 포함함  
\* 비목별 세부 지원 기준은 붙임 RFP 참조
- 기관 당 선정 인원 제한은 없으나 인재활용위원회에서 규모 최종 확정 예정
- (매칭비율)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국비와의 매칭비율 산정

### <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>

제19조(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(이하 "기관부담연구개발비"라 한다)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31.>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
2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

#### (1)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 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함

구분	지원 비율
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중소기업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중견기업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대기업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※ (예시) 중견기업은 최소 30%, 대기업은 최소 50%를 부담해야함

(2)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
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함.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

구분	현금부담 비율
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중소기업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
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	
다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(중견기업)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
라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대기업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

(3)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는 각 호와 같음
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
- 연구시설·장비비
-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
- 소프트웨어 활용비

(4)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

(5) 민간참여 수행비율 및 자부담 산정 예시

< 예시 대기업이 총 8.5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>

-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없을 시 해당 대기업은 8.5억의 50%인 4.25억 원 이상의 자부담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, 이 중 15% 이상(약 0.64억 원)은 반드시 현금 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함

-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위탁 정산 수수료를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반영하여야 함

**<참고> 2026년 위탁정산수수료**

**※ 위탁정산수수료 = 표준수수료 + 가산금**

(단위 : 천원)

연구비 규모 * 당해연도 정부출연금	표준수수료(부가세 포함) '26.1.1.~'26.12.31.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	비고								
1억원 미만	987	* (가산금)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부가 -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○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								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,185									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1,515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공동연구 기관수</th> <th>가산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0개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1개</td> <td>표준수수료의 10%</td> </tr> <tr> <td>2개 이상</td> <td>누적으로 계상하되,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% 추가계상 (산식: 표준수수료의 10% + (N-1)×5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공동연구 기관수	가산금	0개	없음	1개	표준수수료의 10%	2개 이상	누적으로 계상하되,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% 추가계상 (산식: 표준수수료의 10% + (N-1)×5%)
공동연구 기관수	가산금									
0개	없음									
1개	표준수수료의 10%									
2개 이상	누적으로 계상하되,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% 추가계상 (산식: 표준수수료의 10% + (N-1)×5%)									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1,647	○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								
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1,845									
30억원 이상	2,043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구 개발기간</th> <th>가산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년 이하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1년 초과</td> <td>표준수수료 매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%씩 가산 *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구 개발기간	가산금	1년 이하	없음	1년 초과	표준수수료 매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%씩 가산 *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		
연구 개발기간	가산금									
1년 이하	없음									
1년 초과	표준수수료 매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%씩 가산 *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									

- 본 사업(과제)은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및 관리함
- 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의함

※ 관련 규정 조회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,  
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

-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
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

- (해당시)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

- 본 과제 선정 시,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'데이터관리계획' 수립 및 제출 (계획서 첨부 양식)

※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

- 연구책임자가 데이터 관리계획서(DMP)에 명시한 시점, 장소, 기간,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

※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(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, 논문·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)

## 8. 향후 일정

일정	내용
2026. 3. 26.(목) ~ 5. 18.(월)	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
2026. 5~6월 중	평가 실시(발표 또는 서면)
2026. 6월 중	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
2026. 6월 중	협약 체결

※ 평가 및 선정, 협약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## 9. 문 의 처

### 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- 우주항공청 (<https://www.kasa.go.kr>) → 알림 → 사업공고

### □ 문의처

- 문의사항별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

	과제제안요구서 등	과제접수/평가/절차 등	전산등록/사업관리시스템(IRIS)
문의처	☎ 055-8☎ 055-856-4238 kamji222@korea.kr	임무지원단 (☎ 055-856-5017 kasarnd@korea.kr	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(☎ 1877-2041)

- 대표 이메일 : [kasarnd@korea.kr](mailto:kasarnd@korea.kr)

붙임 1. RFP(사업안내서 포함)

별첨 1. 연구개발계획서(양식)

2. 기타증빙(양식)

3. IRIS 매뉴얼 및 필수이행사항